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1선거구

고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9. 3.)과 이 조례 개정(2019. 7.)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 상의 ‘임대산업시설’의 범위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 핀테크 등 금융스타트업 등으로까지 넓힘으로써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여, 개발사업 등으로 영업 터전을 잃은 상인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를 완화하거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외) 아파트 건축시 층수를 따로 정할 경우, 해당 심의 위원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